##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25 발의연월일: 2025. 5. 28.

발 의 자: 민형배·김성환·이개호

박지원 · 김문수 · 김동아

소병훈 · 김현정 · 주철현

조계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정당의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민주국가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 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당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개발 활성화,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 등으로 정당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로 민주정치의 재정 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 가.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치·선거제도에 대한 선거권자의 이해를 높이며 정치자금의 기부를 촉진하는 등 민주정 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정치발전기금의 재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납입되는 기탁금 미반환액과 과태료 징수액, 국가 및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30조의2 신설).
- 나. 정치발전기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 다. 정치발전기금은 정당 및 정책연구소의 정책 개발·연구 지원, 정당관계자 및 선거관계자에 대한 교육 지원,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지원,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 라. 정치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30 조의5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624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106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 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 임.

법률 제 호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마. 제30조의2에 따른 정치발전기금에의 출연금 제5장의2(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의2 정치발전기금

제30조의2(정치발전기금의 설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치·선거제도에 대한 선거권자의이해를 높이며 정치자금의 기부를 촉진하는 등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공직선거법」 제57조·제261조·제265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 2. 국가의 출연금
- 3.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국가 외의 자의 출연 한도와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탁"은 "출연"으로, "기탁금"은 "출연금"으로 본다.
-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납입 방법·절차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항제3호에 따른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30조의3(정치발전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 ② 사무총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 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③ 사무총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30조의4(정치발전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정당 및 정책연구소의 정책 개발 연구 지원

- 2. 정당의 간부·당원·유급사무직원 등 정당관계자에 대한 교육· 연수 지원
- 3.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교육· 안내 지원
- 4. 정치자금의 기부 · 기탁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지원
- 5. 선거 · 정당 · 정치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지원
- 6.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 7. 「공직선거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
- 8. 기금의 조성 및 관리 ·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제30조의5(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 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 운용심의회를 둔다.
  - ②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30조의6(정치발전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0조의7(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제30조의4에 따라 지원된 기금은 지원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사무총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1		
목과 같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마. 제30조의2에 따른 정치발		
	전기금에의 출연금		
<u>마.</u> ・ <u>바.</u> (생 략)	<u>바.•사.</u> (현행 마목 및 바목		
	과 같음)		
<u>사.</u> <u>바목</u> 에 열거된 사람(정당	<u>아.</u> <u>사목</u>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			
에 소요되는 비용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5장의2 정치발전기금		
<u>&lt;신 설&gt;</u>	제30조의2(정치발전기금의 설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의 정책 개발 및 연구를 활성		
	화하고 정치・선거제도에 대한		
	선거권자의 이해를 높이며 정		
	치자금의 기부를 촉진하는 등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필		
	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발전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공직선거법」 제57조·제2 61조·제265조의2 및 제271조 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 2. 국가의 출연금
- 3.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 익금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국가 외의 자의 출연 한도와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탁"은 "출연"으로, "기탁금"은 "출연금"으로 본다.
-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납입 방법·절차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항제3호에 따른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

제30조의3(정치발전기금의 관리 · 운용) ① 기금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

<신 설>

총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 한다.

- ② 사무총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 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 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 무원을 임명한다.
- ③ 사무총장은 기금의 효율적 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이를 담당하는 별 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

제30조의4(정치발전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정당 및 정책연구소의 정책 개발·연구 지원
- 2. 정당의 간부·당원·유급사 무직원 등 정당관계자에 대한 교육·연수 지원
- 3.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신 설>

<신 설>

교육 • 안내 지원

- 4.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을 촉 진하기 위한 홍보 지원
- 5. 선거·정당·정치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지원
- 6.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 7. 「공직선거법」 제10조에 따 른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 진활동 지원
- 8.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제30조의5(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 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 다.
  - ②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 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 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각 1 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범 위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 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

<신 설>

<신 설>

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정치발전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 사항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30조의6(정치발전기금의 회계 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 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정한다.

제30조의7(목적 외 사용금지 등)

- ① 제30조의4에 따라 지원된 기금은 지원된 목적 외의 용도 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사무총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 에 관하여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